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3

심의일자	2018.6.19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뚝섬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1 주상복합 신축사업 / 성동구 성수동1가 671-179번지 일원		
의결번호	2018-13-2	심의결과	보류의결

[심의 내용] 건축 + 교통

-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보류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「건축법」 제4조 및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 제17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< 건축 분야 >

건축계획

- 12m 도로변과 15m 공공보행도로변의 근린생활시설은 주변의 기존 근생 및 상업시설 가로변 형태의 조화를 고려하여 디자인 개선 바람.
- 특별계획구역에 맞는 입면 디자인 및 색상 계획 검토 바람(특별계획구역2와의 입면 차별화 고려).
-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조치사항 중 “왕십리로변 주동 측벽에 대한 개방형 입면계획 계획 반영” 내용에 대하여 발코니 형태가 아닌 개방형 입면으로 개선되도록 재검토 바람.
- 주변 도로변의 보행시 또는 차량에서 공공청사를 인지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동선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개선 검토 바람.
 - 1층 공공청사 주출입의 인지성이 떨어지므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전면 도로변 공지에서 외부계단 또는 승강기 등을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 바람.
 - 공공청사는 3층에만 배치되어 있으나, 일부 구간은 1층에서 2~3층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판매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공간 재 배분하기 바람.
- 102동 옆 부출입구에서 들어오는 보행로가 협소하여 차로를 통해서 들어와야 하는 상황으로 적정 보행로 폭 확보 바람. - 계속 -

2018.6.19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3

심의일자	2018.6.19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뚝섬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1 주상복합 신축사업 / 성동구 성수동1가 671-179번지 일원		
의결번호	2018-13-2	심의결과	보류의결
[심의 내용] 건축 + 교통			
< 건축 분야 >(계속)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계획(계속)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주차출입과 보도에서부터 단지로의 레벨 상세히 표기 바람.○ 103동 2층 근린생활시설은 사용자를 명확히 하여 동선을 재정리하고, 단면 높이를 104동과 비슷하도록 검토 바람.○ 공공보행통로와 단지 내 연계방안 검토 바람(보완을 강화하는 방안과 병행 검토).○ 104동 주차 램프 상부 지상2층 세대 삭제 바람(소음, 진동 등 피해 고려)○ 어린이집은 서울시 어린이집 유니버설디자인 지침에 맞게 계획 바람.○ 십자형 주동으로 인한 세대간 프라이버시 검토 바람.(권장)○ 용적률 완화 체계 재검토 바람.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방재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주동 평면계획상 세대내 화재시 아래층으로 또는 상부층(계단)으로의 피난 계획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완 바람.○ 세대 평면내에서의 피난 대비 표시 바람.○ 기타 건축재료의 유해성 확인(라돈가스, VOCs등의 문제)을 통한 사용 계획 강화 바람.			
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중 신재생 에너지 설치를 위해 태양광과 연료 전지를 적용하였는데 태양광의 비율을 최대화하고, 연료 전지 비율을 최소화 하기 바람(연료 전지의 정확한 사용처(열원)에 대하여 명기 바람).○ 뚝섬 도심지 생태적 환경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함(녹색건축인증 생태 환경 분야의 적용 비율 적음 - 주거20점 중 1.4점적용, 비주거 20점 중 6점 적용). - 계속 -			

2018.6.19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3/3

심의일자	2018.6.19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뚝섬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1 주상복합 신축사업 / 성동구 성수동1가 671-179번지 일원		
의결번호	2018-13-2	심의결과	보류의결

[심의 내용] 건축 + 교통

< 건축 분야 > (계속)

조경

- 팽나무 교목 식재지는 전체 토심이 1.2m로 교목 식재를 위해 최소 1.5m 식재 기반이 확보되도록 하여 지하 배수층(30cm 확보) 배수망 확보 바람.
- 녹지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설계하여 마운딩 처리가 어려우므로 식재지를 통합하여 식재면적이 크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 검토 바람.

< 교통 분야 >

- 부출입구 이용시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므로, 주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방안(안내체계)을 검토하기 바람.
- 종합개선안도 F교차로(신설교차로)에 대해 교통량, 횡단보고 보행 가능 시간 등을 검토하여 신호주기, 현시 등 최적화 방안 제시 바람.
- 종합개선안도의 B-B`도로에 대해 왕십리로 등에서 진출입 교통량을 검토하여 도로계획을 수립하기 바람.
- 공공보행통로와 횡단보도에 대해 보행자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검토하기 바람.
- 종합개선안도 및 지하주차장 도면은 범례와 개선내용이 일치되도록 수정하기 바람.
- 종합개선안도에서 현황(기준), 신설 횡단보도에 대해 표시를 조정 바람.
- 도로 단면도(A-A`) 오기 수정 바람. 끝.

2018.6.19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